

뉴욕-201404-07

미국 세관의 수산물에 대한 통관기준

2014. 4. 29

뉴욕지부

〈 목 차 〉

I. 미국의 수입통관 절차 및 제도	3
1. 美 식품 수입 정책 및 관세	3
2. 美 수입통관 절차 및 신고 절차	3
3. 美 수입통관 시 원산지규정 및 구비서류	4
4. 美 주요 수입 통관제도	5
5. 美 FDA 사전신고제 및 수출시 유의점	5
II. 미국의 수산물 수입 통관 제도 및 절차	6
1. 對美 수산물 수출 통관제도	6
2. 對美 수출자를 위한 법규 및 준수사항	7
3. 對美 수출시 검역 및 통관	8
III. 對美 수산물 수출시 품목별 사례 및 주의사항	9
1. 일반 통관보류 현황.....	9
2. 품목별 사례	9
3. 對美 수출시 주의사항	11
IV. US FDA의 Red List	12
1. 1. US FDA Import Alert 16-74	12

I 미국의 수입통관 절차 및 제도

1. 美 식품 수입 정책 및 관세

□ 식품 수입 정책

- 2001년 9.11 테러 이후 대테러 방지와 식품공급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위기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함
 - － 모든 해상컨테이너 화물 방사능 전수 검사와 연방기관(OGA)의 독자적 수입 화물 검사 및 처분권을 강화함
 - － 식품분야는 ‘공공보건과 및 바이오테러대응법’ (2002년 제정)을 운영

□ 관세제도

- 美 관세청에서는 美 국제무역위원회¹⁾에서 발행한 관세율표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를 적용
 - － 매년 당해 연도의 품목별 정확한 관세율을 제시
- 美 관세법은 수입 시 준수사항, 관세평가, 감세 및 환불 등을 규정한 통관 및 관세에 관한 기본법

2. 美 수입통관 절차 및 신고 절차

- 수입통관 시 수입신고 대상금액은 US 2500달러 이상이며, FDA와 수입통관 관계기관²⁾이 지정한 수입제한 품목일 경우 US 250달러 이상은 수입신고 필요함

1) 美 국제무역위원회(USITC,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準사법기관으로 미국의 대외교역이 국내생산, 고용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간의 거래 및 관세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대통령, 의회 및 정부기관에 제출함

2) 수입통관 관계기관에는 CPSC(美 소비자보호 안전위원회), EPA(美 환경보호청), FCC(연방통신위원회), FDA(美 식품의약청), FWS(美 수산야생동물청), USDA & APHIS(美 농림부 및 식품안전검사청) 등이 있음

□ 일반 수입절차

- 수입상은 입국통지서를 접수시키고 관세청 통과를 위한 보증금을 준비
- 美 국토안보국(CBP)내 관세국경보호청에서 US FDA에 수입신고서³⁾를 접수한 뒤 수입허가 결정을 요청
- FDA는 수입서류를 검토하고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수속 진행 동의서⁴⁾를 세관과 수입업체에게 송부하고 즉시 입국 허가
 - 검사필요 판단 시 US FDA가 샘플 수거를 하여 실험실에서 검사 실시
 - 샘플 검사 후 US FDA 실험실에서 안전 판정을 받으면 입국이 허가되나, 불합격 판정을 받을 시 입국을 거부당함
 - 불합격 판정을 받은 수입업체는 반송⁵⁾ 혹은 폐기를 해야 하나,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음

3. 美 수입통관 시 원산지 규정 및 구비서류

- 美 정부는 美 관세청이 주관하는 원산지⁶⁾ 표시 규정을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반드시 지키도록 요구함
 - 원산지를 표시 하지 않거나 표시규정을 위반할 경우 美 무역 세관법을 위반하게 되므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함
 - 원산지를 표시할 때 읽기 쉽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지워지거나 분실되지 않게 해야 하고, 국가명은 표준영어로 된 국가 이름 이어야 함

3) 수입신고서류는 선하증권, 수입허가증빙서류, 요금청구서, 포장명세서 등이 있음

4) May Proceed Notice

5) 화물 반출 시 수입세금 담보(Single Transaction Bond, Continuous Bond, Cash Deposits 중 택일)를 제출해야 하는데 화물 반출 후 CBP(美 관세국경보호청)에서 30일 내 환수 가능

6) 원산지란 최종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할 시 그 상태의 물품이 생산 및 제조 되는 국가

- 韓美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인이 수입허가증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특혜관세 적용 신청을 해야 함

4. 美 주요 수입 통관 제도

- 美 국토안보국(CBP)은 핵심 통관정책으로 ‘One-stop shop’ 프로그램을 통해 각 통관지 세관 심사 및 사후관리를 간소화 함
 - 신뢰기업이 수입하는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美 국토안보국 품목별 전담센터에서 통합 관리
- 美 국토안보국의 C-TPAT⁷⁾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통관검사 시 최우선으로 수입 화물을 통관 시킬 수 있으며, 통관 상 문제 발생 시 어카운트 매니저를 지원 받을 수 있고, 무작위 전수검사 대상에서 전면 제외됨
 - C-TPAT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등 생산 및 유통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통관의 간소화 및 전수검사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큼

5. 美 FDA 사전신고제 및 수출시 유의점

- 對美 식품수출시 ‘공공보건안전 및 바이오테러대응법’에 의거 US FDA에 제조시설 등록과 수출정보를 사전보고 해야 함
 - 식료품 수출 시 항공화물은 도착 4시간 전, 해상화물은 8시간 전에 US FDA에 보고하여 확인 받아야 하고 위반할 시 통관이 보류되거나 반송 또는 폐기 됨
- 對美 수출시 수입통관요건을 숙지하고 사용 원료의 정확한 성분과 함량을 표시해야 하며, 의약품으로 오해될 수 있는 내용의 글이나 광고는 자제
 - 식품제조 시설 변경 시 US FDA에 변경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함

7) C-TPAT(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은 美 국토안보국의 테러예방화물 보안프로그램의 한 종류로 CBT와 수입기업 간 진행하는 수입화물 안전통관 규약으로써 테러나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을 수입통관에서 전면 제외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하나로 화물수입업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

1. 對美 수산물 수출 통관제도

- 오바마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 안전을 위해 식품안전 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을 시행하여 국내외 식품과 식품제조시설에 대해 위생 검역과 감독을 강화
 - US FDA는 美에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규정을 정하고, 2013년 6월부터 내장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가공생선⁸⁾에 대해 수입경보(Import Alert 16-74)를 내려 물리적 검사 없는 역류를 실시
 - 크기 5인치 미만의 생선에 대해서도 내장 제거를 요구하고 내장을 제거하지 않을 시 안전성 입증을 받아야 통관 가능
 - 수입업체는 물품 도착 5일안에 세관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US FDA는 물품에 대한 검사여부를 결정
 - 다른 물품과 마찬가지로 수산물도 눈에 잘 띄는 곳에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함
 - 냉동수산물의 경우 최종소비자가 구매 할 때까지 냉동상태여야 하므로 운송 기간 중 포장 및 냉동과 습도에 주의해야 함
- US FDA가 자국산 및 수입산의 모든 수산물을 위해 제정한 HACCP⁹⁾을 통과하여 수산물의 안전을 확신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US FDA의 위생 규정준수를 지켜야 함
 - US FDA의 美 수입업체 감사 확인사항

8) 다양한 가공방법, 예를 들어, 건조, 발효, 염장, 절임, 훈제 등으로 가공된 생선

9)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은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식품의 원재료 생산, 가공, 보존, 유통을 거쳐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식품을 섭취하기까지 각각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한 요소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

- 수입수산물에 대한 수출업체의 HACCP 및 위생관리기록
- 수출국 및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HACCP인증
- 수출업체의 HACCP 플랜 및 수입품목에 대한 HACCP 인증서
- 기타 증빙서

□ 수산물 수입쿼터는 대부분 존재하지 않으며, 참치(HS code 1604.14.22)는 관세율 쿼터가 존재함

2. 對美 수출자를 위한 법규 및 준수사항

□ ‘공공보건과 바이오테러대응법’에 의거 對美 수출업체는 US FDA에 식품 시설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 후 對韓 수입업체는 시설등록 번호를 받으면 식품수입 사전신고 시 시설등록번호(Registration Number)를 입력해야 함

○ 對美 수출업체는 시설등록번호를 발급받지 않으면 물품 통관이 불가능

□ 美 내의 수산물 수입자는 US FDA가 요구하는 사항 2가지 중 한 가지를 충족시켜야 함

○ 수산물 수출국은 美의 위생규정과 동일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

- US FDA는 HACCP를 대신하여 몇몇 국가와 MOU¹⁰⁾를 체결하였는데 패류는 MOU 규정을 준수하면 HACCP 규정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 없음

· 美는 우리나라와 패류위생협정 MOU를 맺었으며, 가공업체도 US FDA에서 인증한 등록업체여야 함

○ 수산물 수출업체가 HACCP의 규정조건에 일치한다는 증명을 해야 함

10)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줄임말로 양해각서라고 하는데, MOU는 어떠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쌍방 당사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담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체결되는 내용에 구속력을 갖지 않음

- HACCP의 규정은 美 내의 업체와 수출업체에 동일하게 적용

3. 對美 수출시 검역 및 통관

- US FDA는 수산물의 경우 다른 식품에 비해 더욱 철저한 위생기준을 적용
 - US FDA가 통관거절 결정을 내릴 경우 90일 이내에 반송이나 폐기 처분 조치
 - 상품표기위반이나 불량 등의 이유로 수산물 통관이 거절되는 경우 US FDA는 검사 없이 억류 가능한 업체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는데 이 같은 경우 5회 이상 US FDA에 통관 승인을 받은 후 삭제요청 청원서를 제출해야 함
 - 수입업체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나 비용을 부담해야 함
 - 날것이나 가공되지 않은 수산물 對美 수출을 위해선 US FDA에 등록되어야 하는데 조리된 제품이나 밀봉 처리된 제품은 제외
 - 패류 선적자 명부(ICSSL)¹¹⁾에 등록된 업체만 對美 수출이 가능하고 매년 ICSSL 등록을 갱신해야 함
- 가공되지 않은 어류원물은 영양표시가 의무는 아니지만 주된 소비품목의 비가공 수산물은 영양표시를 해야 하고, 수산가공제품은 식품표시와 영양표시가 의무사항임
 - 주표시면은 식품표시사항과 식품명 및 실중량 등을 기재하고 정보표시면에는 주표시면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들¹²⁾을 표시
 - 식품알레르기표시 및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11) Interstate Cetified Shellfish Shippers List

12) 제조자, 포장업자, 유통업자의 명칭 및 주소, 원재료명, 영양표시 등

Ⅲ 對美 수산물 수출시 품목별 사례 및 주의사항

1. 일반 통관보류 현황

- 對美 수출시 US FDA에 반드시 통관심사를 거치고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억류처리 됨
 - 물품이 US FDA에 의해 억류될 시 물품이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면 억류해제
- 美 정부는 위생증명 관련 문서가 미흡한 업체나 검사가 불가능한 식품은 수입을 금지
 - 비위생적이거나 불량 또는 불결한 식품은 수입금지
 -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내용의 식품설명서나 포장이 된 식품 수입금지

2. 품목별 사례

- 멸치
 - US FDA의 위생검역이 강화되어 통관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건조멸치에 대한 통관보류 사례 발생
 - 내장을 제거하지 않은 생선은 보툴리누스균¹³⁾의 존재 가능성 때문에 통관보류
 - 크기가 5인치 이상의 생선은 내장을 제거하지 않으면 통관이 불가능
 - 크기가 5인치 미만일 경우 내장문제를 해결했다는 증명을 상업송장(Commercial Paper)에 표기하면 통관가능
 - 내장 미제거시 보툴리누스균이 검출되지 않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HACCP'의 규정에 따라 작업을 진행한 기록을 첨부하여 모든

13) 보툴리누스균(Clostridium botulinum)이 생산하는 신경독소의 일종

자료를 FDA에 제출하여 인정받는 경우 통관 가능

- 증명이 인정받지 못할 경우 반송, 폐기, 검사 중 택일
- 크기가 5인치 미만의 멸치수산물을 통관시키기 위해서는 위생제조절차 (SSOP)¹⁴에 따른 생산과정을 이행하고 HACCP Plan¹⁵에 따라 이행한 전체적인 생산과정 모든 기록을 US FDA에 제출
- 멸치식품은 HACCP 계획에 의거 다음과 같은 수치를 유지해야 함
 - 염분농도 : 10% 이상
 - 산도 : 4.6% 이상
 - 수분활동도 : 0.85

□ 굴

- 굴의 對美 수출을 위해서는 승인된 공장에서 가공된 굴만 수출 가능
- 냉동 굴은 포장지에 US FDA의 승인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만약 US FDA에서 승인되지 않은 제품은 반송됨
 - 해동상태 굴의 중량은 라벨에 명시된 바와 같아야 하고, 만약 다를 경우 반송되거나 판매금지 조치를 당할 수 있음
- 통조림 굴은 공정과정과 제조시설등록은 제품별로 모두 등록번호를 받아야 함

□ 활넘치

- 對美 수출시 자연산인 경우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 22인치 이하는 수입을 금지하므로 양식산임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

14) Sanitation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15) HACCP Plan은 전체적인 제조과정으로 식중독 세균인 보툴리누스균의 성장 증식과 독소형성, 히스타민 형성 등을 통제하는 방법

- 통관시 US FDA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정하는 경우 HACCP 증명서를 제출해야함

□ 굴비(내장포함)

- US FDA는 HACCP에 따라 수입되는 생선의 경우 크기에 상관없이 바로 냉동이나 냉장 처리되는 생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내장을 제거하도록 규정
- 가공 과정을 거친 후 냉동 또는 냉장 처리하는 경우 내장을 제거해야 함
 - 내장까지 완전히 염장처리 또는 건조되지 않을 경우 보툴리누스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식중독 방지를 위한 조치

□ 오징어

- 이물질 발견이 잦아 오징어에 대한 검사가 잦으며 비위생적 가공방법이나 라벨링 문제로 인해 통관 거부되는 사례 종종 발생

□ 조미 김

- 올바른 통관절차를 거치는 경우 어려움 없이 통관 되고 있음

3. 對美 수출시 주의사항

□ 美는 자국민의 건강보호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관련 서류들을 요구

- 對美 수출시 수산물 HACCP 인증은 필수이고, 향후 美에 수출을 계획하는 수출상은 HACCP 인증을 반드시 준비 해야 함
- 식품 안전관련 사항이 바뀔 시 수입품에 대한 통관도 변화됨
 - 변화에 알맞은 정보 숙지 및 신속한 대응과 대처 필요함

IV US FDA의 Red List

1. US FDA Import Alert 16-74

내장을 완전히 혹은 일부 제거된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¹⁶⁾된 생선은 물리적 또는 샘플링 검사 없이 압류

US FDA의 Red List

○ 對美 수출되는 수산물이 ‘불량품’, ‘상품표기위반’ 등으로 수입거부 되는 경우 수입업와 제조업체는 Red list 명단에 포함되고 해당업체의 물품은 ‘검사없이 억류가능(DWPE¹⁷⁾)’

– Red List에서 해제되기 위해서는 미국 수입물품에 최소 5회 이상 US FDA로부터 검사받고 통과된 후 FDA에 삭제요청 청원서 제출

○ US FDA의 Red List에 포함된 한국기업 목록

기업명칭	주소	날짜
BO SUNG FOODS CO., LTD.	Karakdong 121 , Seoul, KR-NOTA KOREA, REPUBLIC OF (SOUTH)	07/25/2011
Blueseas Food	761 Amnam Dong Seo Ku , Busan, KOREA, REPUBLIC OF (SOUTH)	02/27/2012
DAELIM FISHERIES UNION CO.	815-3, NAMGOK-DONG, BORYUNG-CITY, , CHUNGNAM, KOREA , BORYUNG-CITY, KR-44 KOREA, REPUBLIC OF (SOUTH)	09/20/2011
DONGJIN SEAFOOD	Yonsandong 1236 6 , Mokpo, CHONNAM KOREA, REPUBLIC OF (SOUTH)	02/09/2012
Daeha Food	363-3 Gaju-Dong , Chu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REPUBLIC OF (SOUTH)	06/13/2011
Daerim Co., Ltd.	482-2, Bangbae-Dong, Seocho-Gu , Seoul, KOREA, REPUBLIC OF (SOUTH)	07/12/2011
Dong Jin Trading Co	729-10 Ilwon Dong Gangnam Gu , Seoul, KOREA, REPUBLIC OF (SOUTH)	04/18/2012
GOLD OCEAN	Songpagu 170 , Seoul, Seoul KOREA, REPUBLIC OF (SOUTH)	12/03/2013
Go West Company	246, Gwangnaman-ro , Gwangju-city, KYONGGI KOREA, REPUBLIC OF (SOUTH)	06/18/2013

16) 소금이나 식초에 절임, 훈제, 젓갈류, 발효, 등

17) Detention without physical examination

Green Sea Food Co Ltd	6 Manheung-Dong , Yesu, KOREA, REPUBLIC OF (SOUTH)	04/22/2014
HAE SUNG	Songpagu 2 5 , Seoul, SEOUL KOREA, REPUBLIC OF (SOUTH)	10/29/2012
HAE SUNG CO., LTD	1236-6, Yeonsandong, Mokposi , Jeollanamdo, CHONNAM KOREA, REPUBLIC OF (SOUTH)	06/07/2012
Hee Chang Trading Company LTD	523-29, Nambumin-Dong, Seo-Ku , Busan, KOREA, REPUBLIC OF (SOUTH)	01/20/2012
ILSUNG F&P Co., Ltd.	39-20, JORIMI-RO , Kimpo, KYONGGI KOREA, REPUBLIC OF (SOUTH)	06/28/2013
INC, HEAMIWON	409-9, JANGHYEON-RI, JINJEOP-EUP, , NAMYANGJU-SI, KR-41 KOREA, REPUBLIC OF (SOUTH)	07/20/2011
JEL JON FOOD CO.,LTD	496-5. janggi-dong , Gwangju-city, KYONGGI KOREA, REPUBLIC OF (SOUTH)	03/09/2012
JEL ZON FOOD CO.,LTD	chowul-eub, sin wul-li 164-1 , Gwangju, KYONGGI KOREA, REPUBLIC OF (SOUTH)	11/21/2013
JOO SIN DRIED SEAFOODS	Songpagu 37 2 , Seoul, SEOUL KOREA, REPUBLIC OF (SOUTH)	08/24/2012
Munju Food Co.,Ltd.	617-2, Jinu-ri, Docheok-myeon , Gwangju, Gyeonggido KOREA, REPUBLIC OF (SOUTH)	09/10/2013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11-6, Shinchon-dong, , SONGPA-GU,, KR-11 KOREA, REPUBLIC OF (SOUTH)	07/25/2011
Narae Traditional Food Co. Ltd.	1363-14 Pyeungsa-ri Dolsan eup , Yeosu City, Jeollanam-do KOREA, REPUBLIC OF (SOUTH)	07/25/2012
POWERED ANCHOVY DRAG NET FISHERIES COOPERATIVES	Chongnyangdong 1405 , Tongyong, KYONGNAM KOREA, REPUBLIC OF (SOUTH)	05/02/2011
SEAFOODLIFE COPORATION	B 103 POSTECHNO BLDG., 234-1, , SANGDAEWON-DONG, JUNGWON-GU, SEONGNAM-SI , SEONGNAM-SI, KR-41 KOREA, REPUBLIC OF (SOUTH)	06/03/2011
SHINRIM MULSAN	501, 166-8, SUKCHON, SONGPA, , SEOUL, KR-11 KOREA, REPUBLIC OF (SOUTH)	05/07/2012
WONJEONG SUSAN	472-1 DEOKHO-RI HI-MYUN , Goseong-gun, KYONGNAM KOREA, REPUBLIC OF (SOUTH)	05/09/2013
WOORI AND PARANHAE CO., LTD.	1445 Yongju-ri, Hwayang-myeon , Yeosu-si, CHONNAM KOREA, REPUBLIC OF (SOUTH)	02/11/2013
YS Food Corporation	10, Gaetbeolcheheom-ro, Seo-myeon , Seocheon-gun, CHUNGNAM KOREA, REPUBLIC OF (SOUTH)	06/18/2013
Young Shin Food Co Ltd	72-533 Dodun-Ri Seo-Myun , Choongnam, KOREA, REPUBLIC OF (SOUTH)	07/20/2011
Youngwoo Frozen Foods Co., Ltd.	349-5 Sanwoo-Ri, Inwol-Myun , Namwon-si, Jeollabuck-Do KOREA, REPUBLIC OF (SOUTH)	02/23/2012
seo jin sang sa	218-2 Mok-dong , kwangju, KR-41 KOREA, REPUBLIC OF (SOUTH)	09/13/2012

자료: FDA Import Alert (www.accessdata.fda.gov/cms_ia/importalert_48.html)